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5. 4. 11.

다. 상정일자 :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5. 4. 2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가족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영향과 관계없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 전용시설임
-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2) 추진 필요성

- 계절·미세먼지 등 실외 환경적 제약 없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필요
- 위탁자는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경제성 증대
- 전문성과 아동 복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아동에 대한 현장 대응성 제고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돌봄 및 놀이 복합시설로의 운영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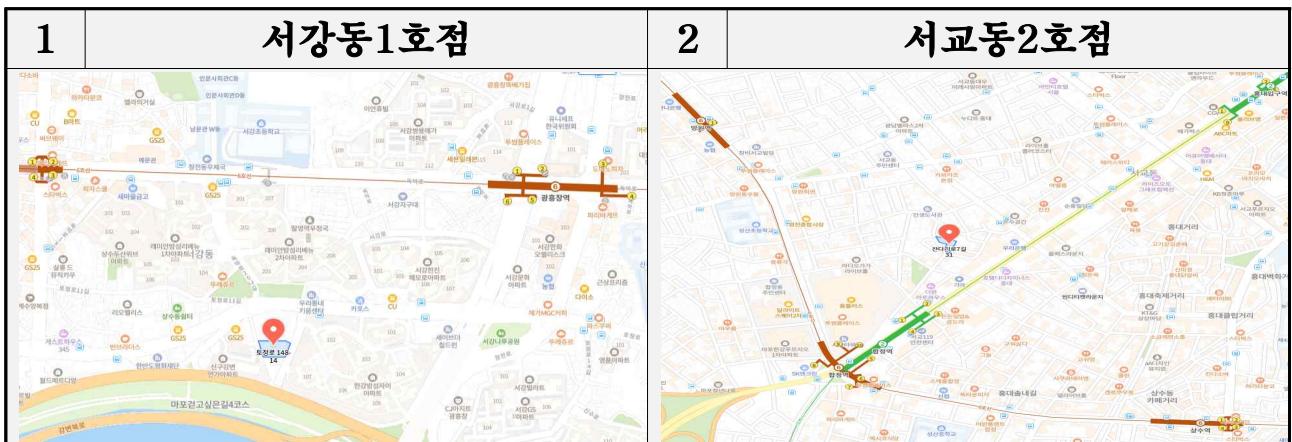
- 조직·인사관리·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위탁시설 개요

1) 소재지 및 면적

연번	시설명	소재지	면적(m ²)	개관 예정일
1	서강동1호점	토정로 148-14, 2층 (서강동, 서강실뿌리복지센터)	426.82	2025. 09.
2	서교동2호점	잔다리로 7길 31 (서교동, 서현교회)	407.10	2025. 12.

2)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1) 서강동1호점: 공개모집
- 2) 서교동2호점: 지정위탁(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

○ 소요예산

1) 서강동1호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시비	구비	비고
총계	251,000	145,400	105,600	
인건비 (4인기준)	200,000	125,000	75,000	시비: 2명까지 100%, 초과 인원 30% 구비: 2명 초과 인원의 70% * 202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운영비	51,000	20,400	30,600	시비40%:구비60%

2) 서교동2호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시비	구비	비고
총계	251,000	145,400	105,600	
인건비 (4인기준)	200,000	125,000	75,000	시비: 2명까지 100%, 초과 인원 30% 구비: 2명 초과 인원의 70% * 202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운영비	51,000	20,400	30,600	시비40%:구비60%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2)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1) 제출경위

○ 본 동의안은 2025. 4. 1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권 근거리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영향과 관계없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동전용 시설로 아동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2)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문적·능률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서강동 1호점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선정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서교동 2호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예정임.
-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입장료가 저렴한 가격(보호자 포함 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추후 민간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대응과 민간사업자와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설 기관인 만큼 개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
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
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2.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 현황[설치예정 포함]

○ 총괄현황: 6개소

계	운영 중	추진 중(개소시기)	
		2025년	2026년
6	1	3	2

○ 운영 중: 1개소(상암점)

명 칭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상암점
위 치	마포구 상암산로1길 71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3층)
개 관 일	2023. 8. 31.
운영요일(시간)	화~일 9:00 ~ 18:00
이용연령	12개월 이상 ~ 6세
이용자수	(2024년 기준) 누계 19,692명 / 일평균 68명
이용요금	3천원-놀이 이용료 (아동 2,000원, 부모 1,000원), 2천원-돌봄 이용료
운영인력	7명 *시설장은 마포구육아종합센터장 겸직

○ 추진 중: 5개소

○ 2025년 개소 예정: 3개소

명 칭	서강동1호점	영리동점(쌍룡산 근린공원점)	서교동2호점
위 치	마포구 토정로 148-14	마포구 영리동 532-5외 1	마포구 잔다리로7길 31
사업유형	서강실뿌리복지센터 리모델링	쌍룡산 근린공원 건축(신축)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
규 모(㎡)	380.72	249.91	407.1
개 관 일	2025. 9.(예정)	2025. 11.(예정)	2025. 12.(예정)
이용연령	4세~9세	3세~5세	6개월~6세
소요예산	761,460천원(시비)	2,251,500천원 ※ 시 특교금, 특교세	814,000천원(시비)
주관부서	보육정책과	공원녹지과	가족정책과

○ 2026년 개소 예정: 2개소

명 칭	서교동1호점	서강동2호점
위 치	마포구 동교로132-3	마포구 창전로69
사업유형	SH공사 노후매입주택 활용 생활SOC 조성사업	구립 창전어린이집 복합시설 대체신축
규 모(㎡)	273.73	450
개 관 일	2026. 1.(예정)	2026. 3.(예정)
이용연령	4세~9세	미정
소요예산	547,780천원(시비)	1,800,000천원(시비)
주관부서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